###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766 2021년 12월 17일환경수자원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10월 14일, 강대호 의원 외 25명

나. 회부일자: 2021년 10월 20일

다. 상정일자: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1년 12월 17일 상정·원안 가결)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강대호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 근거를 바로 잡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 근거를 정정함(안 제3조).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페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를 바로 잡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폐기물관리법」"을 "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폐기물관리법」"으로, "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"을 "따라"로, "에 대하여"를 "에게"로 하고, 같은 항 제 5호 중 "후생복지에 관한 사항"을 "후생복지 증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2항 후단 중 "한, 이에 응하여야"를 "한 이를 따라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"광역폐기물처리시설"을 "광역 폐기물처리시설"로 하며, 같은 조 제 세상 단서 중 "위해"를 "위하여"로, "설치해야 할"을 "설치할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폐기물의 광역관리)"를 "(폐기물의 광역 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「폐기물관리 법 시행」제5조"를 "법 제5조"로, "위탁"을 "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광역폐기물처리시설"을 "광역 폐기물처리시설"로, "따른"을 "따라"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"를 "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6조"를 "서울특별시가 법 제6조"로, "시가 반입수수료를"을 "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(이하 "반입수수료"라 한다)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소요되는"을 각각 "드는"으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"를 "제6조제2항제2호"로, "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제8조의"를 "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5조의2 중 "위해"를 "위하여"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항의"를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제7호"를 "영 제2조제7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의"를 "제1항에 따른"으로, "관하여"를 "있어"로, "등,"을 "등에 관하여"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39조"를 "시장은 법 제39조"로, "시장은 관계공무원"을 "관계공무원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"을 "사람에게 예산의 범위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"를 "제1항에 따른"으로, "신고에 의하여"를 "신고로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이루어 지도록"을 "이루어지도록"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"을 "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페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)	제2조(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
① 「페기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	정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
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	한다)은 「폐기물관리법」
<u>장"이라 한다)은</u>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	따라
장"이라 한다) <u>에 대하여</u> 다음 각 호의	<u>에게</u>
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청소인력의 안전 및 <u>후생복지에 관</u>	5 <u>후생복지 증진</u>
<u>한 사항</u>	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	2
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	
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	
한, 이에 응하여야 한다.	<u>한 이를 따라야</u>
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	3
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	
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	<u>광</u> 역 페기물처리시설
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	
수 있다.	
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	4
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	
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	
리 환경 개선을 <u>위해</u> 불가피하게 쓰레	
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	<u>설치할</u>
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.	

제3조( <u>폐기물의 광역관리</u> ) ① 시장은 <u>광</u>	제3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 법
역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	제5조
「페기물관리법 시행」 제5조 또는 「서	
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	
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서	<u>광</u> 역 페기물처리시설의
정한 자에게 <u>위탁</u> 할 수 있다.	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
② 2 이상의 자치구가 광역페기물처리	② 광역 폐기물
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	처리시설
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<u>따른</u>	따라
조합을 설립・운영할 수 있다.	
제4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	제4조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) ① 서울
① 법 제6조에 따라 시가 반입수수료를	특별시가 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
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	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
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	한 비용(이하 "반입수수료"라 한다)을 —.
1.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	1
를 고려하여 페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	
페기물의 처리에 <u>소요되는</u> 적정경비	<u>ㄷᆫ</u>
2.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	2
페기물을 직접 수집 · 운반하는 경우에	
는 그 수집·운반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	드는
3.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	3
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	<u>ㄷ</u> 는
경비	
② 반입수수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	②
관하여는 지방세 부과·장수의 예에 <u>의한다</u> .	따른다.
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구청장	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
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	
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<u>이 조례</u>	제6조제2항

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
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확보 등 지원)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,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

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(생 략)

한 기술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<u>제1항의</u>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탄재·재활용 가능품·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- 2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 제3호가목(2)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
- ③ 제1항의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압축폐기물,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,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・감독) 법

제2호
 「페기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
<u> "영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</u>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
확보 등 지원)
<u>शिठी</u>
<del></del> .
제6조(페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(현행
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
 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2조제7호
3 <u>제1항에 따른</u> <u>있어</u>
<u>등에 관하여</u> 
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 <u>시</u>

제39조에 따라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- 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)
  ① 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<u>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</u>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<u>제1항의</u>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<u>신고에 의하여</u>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 게 지급한다.
  - ③ (생략)

제10조(시민참여)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.

 $②\sim ③$  (생 략)

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 법 제68조에 따른 <u>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</u>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과 같으 며, 부과・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<u>장은 법 제39조</u>	관계공무원	
	·	
1. ~ 4.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의		
1		
<u>/</u> -		
<u>범위</u>		
 ② 제1항에 따른		
② 제1성에 따는 신고토		
<u>.</u>		
· ③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(시민참여) ①		
	- <u>이루어지도록</u>	
 ② ~ ③ (현행과 같음)		
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		
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		
·.		